

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29 / 전송(02)792-5208  
**익슬면허국** 국장 장원현 [6564] 학술교육팀장 손용석 [6518] 담당 김준환 [6529] / E-mail:alexantel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442-11484호

시행일자 2026. 1. 27.

수 신 각 연수교육기관장

참 조

제 목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(제2026-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)

1.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제43대 제3차 연수교육 시행·평가단 운영위원회(2025.12.8.)

나. 제43대 제46차 상임이사회의 의결(2025.12.17.)

3. 위호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, 각 연수교육기관에서는 동 개정 지침을 숙지하신 후 연수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지침 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안내 사항

1) 신규 면허 취득자 사이버 연수교육 허용 기준 신설

- 신규 면허취득자의 경우 면허 취득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  
사이버 연수교육 무료 수강 가능

2) 필수교육 일부 변경 및 환자안전교육 추가

현 행	개 정
필수교육 - 의료윤리, 의료법령, 의료감염관리, 의약품부작용 사례, 의료분쟁 사례 등	필수교육 - <u>직업윤리, 의료관계법령</u> , 의료감염관리, 의약품부작용 사례, 의료분쟁 사례, <u>환자안전교육</u> 등

3) 연수교육기관의 지도·감독 미준수·미이행 시 제재 수단 신설

현 행	개 정						
1. 처분 조치 ○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(1년) 1) 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)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) 연수교육에 관하여 협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4)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)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6) 연수교육 관리·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<u>&lt;신 설&gt;</u> 7) 기타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○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및 제재금 <u>&lt;신 설&gt;</u>	7) <u>협회의 지도나 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</u> 8) <좌 동>						
	⑤ 지도·감독 미준수·미이행시 - 1년 단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1회</th> <th>2회</th> <th>3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 기관 경고 및 제재금 100만원 부과</td> <td>· 기관 경고 · 제재금 200만원 부과</td> <td>· 연수교육신청 기관자격정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회	2회	3회	· 기관 경고 및 제재금 100만원 부과	· 기관 경고 · 제재금 200만원 부과	· 연수교육신청 기관자격정지
1회	2회	3회					
· 기관 경고 및 제재금 100만원 부과	· 기관 경고 · 제재금 200만원 부과	· 연수교육신청 기관자격정지					

4) KMA 연수교육센터 전담 관리자 지정 및 자기관 현황 보고

현 행	개 정
I. [일반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마. 행정사항  <u>&lt;신 설&gt;</u>	6. KMA 연수교육센터 전담 관리자 지정 및 변경 사항 보고 - 연수교육기관은 KMA 연수교육센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, 연수교육의 신청, 결과 보고 등을 전담하도록 관리 - 연수교육기관은 전담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산하 자기관의 신설,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고
II. [필수과목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마. 행정사항  <u>&lt;신 설&gt;</u>	

5) 연수교육 시행 시 최소 강사 수 기준 신설

현행	개정
I. [일반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5. 교육시간과 희망평점 <신설> ○ 6평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몇 좌장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함.	○ <u>2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시행 시 강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.</u> <좌 동>
II. [필수과목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5. 교육시간과 희망평점 <신설>	○ <u>2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시행 시 강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.</u> ○ <u>6평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몇 좌장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함.</u>
III.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가.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 6. 교육시간과 희망평점 ○ 온라인 교육은 기관당 연간 8평점까지 교육 가능(자(子)기관도 동일 적용) <신설>	<좌 동> ○ <u>2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시행 시 강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.</u> ○ <u>6평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몇 좌장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함.</u>

6) 한의사 강사 및 좌장 참여 연수교육 기준 신설

현행	개정
I. [일반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7. 강사기준 <신설> ○ 협회의 정책에 따라 <u>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하여 교육 불인정</u>	○ <u>한의사가 좌장인 경우인 경우 성명, 소속을 신청란에 기재</u> ○ ----- <u>한의사가 강사이거나 좌장인 경우</u> ----- <u>교육 불인정 및 평점 취소</u>
II. [필수과목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7. 강사기준 <신설> ○ 협회의 정책에 따라 <u>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하여 교육 불인정</u>	
III.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가.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 <신설>	8. 강사 기준 ○ <u>한의사가 좌장인 경우인 경우 성명, 소속을 신청란에 기재</u>

8. 대한의사협회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출	○ 협회의 정책에 따라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하여 평점 불인정 및 평점 취소 9. <좌 등>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7) 연수교육 시행 시 과도한 경품 행사 진행에 대한 기준 신설

현 행	개 정
I. [일반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10. 기타 <u>&lt;신 설&gt;</u>	
II. [필수과목 교육기관용] 연수교육 지침 가. 신청 10. 기타 <u>&lt;신 설&gt;</u>	○ 연수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경품 제공 금지
III.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가.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  8. 대한의사협회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출 <u>&lt;신 설&gt;</u>	9. <좌 등> ○ 연수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경품 제공 금지

8) 시행일 : 2026년 4월 1일

붙임 : 제2026-1호 연수교육 지침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